



대검찰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시행 통보

법무부와 대검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6. 8.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제도개선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첨부와 같이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 집행방법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

-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거나 식사대금 영수증과 같이 증빙 자료만으로는 집행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카드 사용
- 현금 집행 시 현금수령증은 반드시 구비하고, 집행내용확인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생략하며, 증빙서류는 별도의 서류철에 보관
-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장(또는 부서장)이 결재
 - ※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같이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가능
- 기관장·부서장 책임 하에 특수활동비 집행일·금액·지급대상자·지급사유 등을 기재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보관(5년간)하고, 기관별, 부서별 특수활동비 집행 담당관(담당자)을 지정하여 관리
 - ※ 수사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자와 사유는 기재 생략 가능하나, 비고란에 기관장(또는 부서장)이 결재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예산, 회계 관련 기록물 5년 보존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검찰청 집행 특수활동비는 감찰부서에서 사무감사 등의 계기에 점검
- 점검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증빙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수활동비 편성 및 배정에 반영.

첨부: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전문) 1부. 끝.

검찰총장

수신자



검찰주사

수사사무관

운영지원과장

차장검사

09/04
검찰총장

협조자 기획조정부장

시행 (2017.09.05.)
우 06590 서울특별시구 반포대로 157

접수

/ www.spo.go.kr

/ 비공개(5)

2017년 9월 검찰 공문 재구성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2017. 8.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I. 추진 배경

- '17. 6. 7. 발표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前 서울중앙지검장 등 만찬관련 사건' 감찰결과 내용에 특수활동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계획 포함

II. 추진 경과

-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TF* 구성(6. 8.)
 - * (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팀원)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 검찰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TF회의 개최(2회 : 6. 19., 6. 29.)
 - 특수활동비 전환규모,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감독 방안 등 논의
 - 기타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개선을 위한 대검 의견 수렴 등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업무협의를(3회 : 6. 19., 7. 6., 7. 21.)
 - 특수활동비 전환규모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설명

III. 제도개선 방안

1. 특수활동비 규모 조정

- 현행 특수활동비(230) 비목 중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 가능한 내역을 발굴하는 등 특수활동비 규모 축소 조정
- ※ 조정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

2. 집행방법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

-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 수립시 총액으로 계상된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구체화·세분화한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
<예시 : 특수활동비 실행예산서>

현 행(예산명세서)	개 선(실행예산서)
·수사일반 - 범죄수사활동비 : 11,312,900천원	·수사일반 - 범죄수사활동비 : 11,312,900천원 ▶대검 각 부서 집행분 0,000,000천원 ○ 7개(00,00,00,00,00,00,00) × 000,000천원, 3개(00,00,00) × 000,000천원 ▶일천성 배정분 : 0,000,000천원 ○ 1그룹 0개청×000,000천원, 2그룹 0개청×000,000천원, 3그룹 0개청×000,000천원, 4그룹 00개청×00,000천원, 5그룹 00개청×00,000천원, 6그룹 00개청×00,000천원, ▶수시 집행분 : 0,000,000천원

- 기관별, 부서(또는 개인)별 수사 및 정보활동 등 실적을 검토하여 실행예산서 작성 및 예산 재배정
- 다만, 수사, 정보수집 등의 업무 특성상 사건규모·난이도·인력·수사기간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수시로 집행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금액은 총액으로 별도 관리
-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거나 식사대금 영수증과 같이 증빙 자료만으로는 집행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 사용
- 현금 집행 시 현금수령증은 반드시 구비하고, 집행내용확인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생략하며, 증빙서류는 별도의 서류철에 보관

-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장(또는 부서장)이 결재

※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같이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가능

- o 기관장·부서장 책임 하에 특수활동비 집행일·금액·지급대상자·지급사유 등을 기재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고, 기관별, 부서별 특수활동비 집행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

<예시 :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일시	지급액	지급대상자	사유	비고

- 수사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자와 사유는 기재 생략 가능하나, 비고란에 기관장(또는 부서장)이 결재

3.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o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집행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검찰관실에서 점검하고, 검찰청 집행 특수활동비는 대검찰청 검찰본부에서 사무감사 등의 계기에 점검

- 점검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증빙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수활동비 편성 및 배정에 반영

[붙임] 특수활동비 관련 규정

붙임

특수활동비 관련 규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적용범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세부지침

-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2009.9.8. 감사원)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 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